

# 부패신고제도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

청렴감찰부 02-2660-2031

- 제정 2005. 06. 30
- 개정 2008. 07. 30
- 개정 2009. 08. 18
- 개정 2009. 10. 14
- 개정 2010. 09. 30
- 개정 2011. 12. 20 지침 제 67호
- 개정 2013. 10. 18 지침 제157호
- 개정 2014. 2. 19 지침 제167호
- 개정 2015. 10. 30 지침 제232호
- 개정 2018. 10. 23 지침 제330호
- 개정 2020. 10. 30 지침 제448호
- 개정 2021. 11. 24 지침 제500호
- 개정 2022. 09. 29 지침 제579호

## 제1장 총 칙<신설 13.10.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08.18, 14.02.19, 15.10.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란 공사 직제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임직원을 말한다.<개정 08.07.30, 09.08.18>
2.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08.07.30> <개정 09.08.18>
  - 가. 공사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사의 예산사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및 사규에 위반하여 공사에 대하여 재산

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라.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상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3. “부패신고자”란 부패신고센터 및 전화·팩스 등을 이용하여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직원과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08.07.30, 09.08.18, 13.10.18, 14.02.19>
  4. “협조자”란 부패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0.30>
  5. “부패신고센터”란 사내 전자문서시스템 및 공사 홈페이지에 부패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개설된 신고센터를 말한다.<개정 08.07.30, 09.08.18, 13.10.18, 14.02.19>
  6. “클린신고센터”란 행동강령 제33조에 따라 금지된 금품 등을 본의 아니게 받았으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된 신고센터를 말한다.<신설 09.08.18>
  7. “비리양심자진신고제(Plea bargaining)”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행하거나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이 자진신고한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감사기준 시행세칙(이하 “세칙”)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감경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신설 13.10.18>
  8. “감경”이라 함은 세칙상 불이익한 처분요구의 수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신설 13.10.18>
  9.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라 함은 세칙 제29조의 처분을 말한다.<신설 13.10.18>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공항공사 소속 임직원 및 부패신고자, 협조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4.02.19, 20.10.30>

## 제2장 부패신고 및 클린신고<신설 13.10.18>

**제4조(부패신고센터의 설치)** 부패신고를 활성화하여 부패를 차단하고 부패문화를 청산하기 위하여 공사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신고센터와 클린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개정 08.07.30, 09.08.18, 13.10.18, 14.02.19>

[제목개정 13.10.18, 14.02.19]

**제5조(부패신고센터의 운영)** ① 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의 처리는 감사실에서 담당한다.<개정 13.10.18, 14.02.19>

② 감사실 담당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09.08.18, 13.10.18, 14.02.19>

1. 부패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사항 처리
2. 우편·전화·팩스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접수된 부패신고사항 처리
3. 부패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

[제목개정 13.10.18, 14.02.19]

**제5조의2(클린신고센터의 운영)** ①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의 처리는 감사실에서 담당한다.<신설 09.08.18>

② 클린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한다.<신설 09.08.18>

1. 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인직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2. 직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놓고 간 경우
3.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반환이 어려운 경우

③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금품 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며,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09.08.18>

1. 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공사 홈페이지에 14일 동안 공고하고 1년간 보관한 후에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제6조(신고의무)** ①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러한 사실을 부패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09.08.18, 13.10.18, 14.02.19>

② 감사실에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사하여야 한다.<신설 09.08.18>

③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09.10.14>

**제7조(신고방법)** ①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서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실명으로 부패신고센터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패행위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08.07.30, 09.08.18, 13.10.18, 14.02.19>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 등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0.30>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11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2.09.29>

④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신설 22.09.29>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2.09.29>

⑥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09.08.18, 22.09.029>

**제8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실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접수 사실과 중요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30>

②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사항은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관계 조사 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패행위 혐의자의 신분과 명예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비밀보장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08.07.30>

- ③ 우편·전화·팩스 등을 이용하여 공사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도 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개정 13.10.18, 14.02.19>
- ④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0.30>
- ⑤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련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신설 20.10.30>
- ⑥ 5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0.30>
- ⑥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0.30>
- ⑦ 신고사항은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0.30>
- ⑧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해 신고자, 협조자, 이해관계인 등이 감사실 등에 출석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09.08.18><개정 20.10.30>
- ⑨ 신고사항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사할 수 있다.<신설 13.10.18>
- ⑩ 신고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업무 처리절차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10.30>]

**제8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개정 18.10.23, 22.09.29>

1.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8조 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8조의3(신고의 취하)**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0]

**제8조의4(신고의 종결)** ①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며,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0]

### 제3장 비리양심자진신고(Plea bargaining)<신설 13.10.18>

**제9조(운영기준)** 이 지침에 따른 비리양심자진신고제도는 업무와 관련하여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우발적 상황으로 인하여 비위행위를 행한 성실한 임직원에게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감경함으로써 조직내 잔존하고 있는 비리를

제거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써, 비위행위를 용인하거나 봐주는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3.10.18]

**제10조(자진신고대상)** ① 자진신고 대상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부당이득을 수수하는 행위
  - 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
  - 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다. 입찰, 계약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 라. 공용재산을 사적사용하거나 수익하는 행위,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하는 행위
  - 마.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알선하는 행위
  - 나.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는 행위
  - 다.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 라. 직무수행과 관련한 중요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3. 건전한 공직풍토를 저해하는 행위
  - 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
  - 나. 직무관련자와 유혹주접 출입을 하는 행위
4. 상기 1호에서 3호의 행위를 지시하는 행위

②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음주운전, 폭행 등의 범죄행위는 자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13.10.18]

**제11조(신고 및 운영절차)** ① 자진 신고자는 본사는 행동강령책임관, 소속기관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분입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개정 21.11.24>

② 분입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소속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하여 1차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 후 감사실로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그 밖에 경고 및 징계·변상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로 신고건을 이첩한다.<개정 21.11.24>

③ 감사실에서는 접수한 신고건에 대하여 담당 감사인을 지정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단, 담당 감사인은 조사 과정중 취득한 정보를 신고자의 동의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감사인 행동규범에 의거 가중 처벌하고 감사실 퇴출 등의 인사조치 시행을 요구한다.<개정 20.10.30>

④ 사실관계 조사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여 심의한다.

1. 공금 횡령 및 유용, 금품·향응수수 행위
2. 1호를 제외한 기타 행동강령 위반행위 중 경고 및 징계, 변상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는다.

1. 비리자진신고제도에 따라 1회 감경조치를 받았음에도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2. 금품수수, 공금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비위행위 내용의 사회적 파급개연성이 크고 조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13.10.18]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자진 신고건 중 중대한 사항에 대한 감경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실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감사인 5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내변호사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실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0.30>

[본조신설 13.10.18]

제13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 1. 고의성 : 비위행위자가 비위행위를 고의로 치밀한 방법에 의하여 계획하고 행하였는지 여부
- 2. 반복성 : 동일한 비위행위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는지 여부
- 3. 원상회복여부 :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의 경우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였는지 여부
- 4. 파급개연성 : 비위행위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지 여부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심의결과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본조신설 13.10.18]

제14조(감경여부 등 확정)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상임감사위원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다만, 사안이 중요한 경우(파면, 해임, 정직 등)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

[본조신설 13.10.18]

제15조(신고기간 등) 자진신고제도는 연중 상시로 운영하되, 행동강령책임관이 신고제도의 효율성 제고, 부패행위 발생으로 인한 경각심 부여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기간을 정하여 집중 신고를 받을 수 있다.<개정 22.09.29>

[본조신설 13.10.18]

### 제4장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등<신설 13.10.18>

제1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09.08.18, 10.09.30>

- 1. 신고자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개정 09.08.18>

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신고관련 수집한 정보

3. 혐의대상자 또는 혐의대상 부서

4. 신고자 등과 혐의대상자 및 혐의대상 부서 등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 등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으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5.10.30, 22.09.29>

③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경우 신고자의 신분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10.09.30>

④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10.09.30>

⑤ 감사실에서는 제1항과 관련하여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을 최소화하고 조사개시전 신고자에게 접수·조사자의 실명을 공지하여야 한다. 또한, 동 직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준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0.09.30><개정 11.12.20>

⑥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과약을 목적으로 IP 등의 확인을 시도해서는 아니 되며, 정보시스템 관리부서에서는 신고자의 IP가 임의로 확인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09.08.18><개정 11.12.20>

⑦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감사실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09.08.18, 10.09.30, 11.12.20, 20.10.30>

제17조(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① 공사 및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이 지침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이하 “불이익 조치”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09.08.18, 11.12.20, 15.10.30, 20.10.30>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 관심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 · 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 · 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 · 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 · 경제적 불이익 조치
-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15.10.30>
- ③ 임직원이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실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 인사 등 구제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5.10.30.>
- ④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실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이 인정되면 해당 부서장에게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09.08.18, 15.10.30.>
- ⑤ 신고를 한 임직원이 감사실에 보직변경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10.09.30>  
<개정 11.12.20>
- ⑥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신설 15.10.30>
- ⑦ 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 전직 ·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직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5.10.30>
- ⑧ 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 · 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 ·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 · 허가, 계약의 잠정적

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직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5.10.30>

⑨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관련자와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사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7조의3항에 따른 신분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15.10.30>  
[제목개정 15.10.30]

**제17조의2(불이익의 추정 등)**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15.10.30>

**제17조의3(신변보호)**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15.10.30, 22.09.29>

**제17조의4(신고자 보호)**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분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2.09.29]

**제18조(협조자 보호)** 이 지침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

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7조의4,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08.07.30><개정 09.08.18, 13.10.18, 15.10.30, 22.09.29>

[제11조에서 이동 <13.10.18>]

**제19조(포상 및 보상 등)** ① 공사는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08.07.30, 13.10.18, 14.02.19, 20.10.30, 22.09.29>

② 공사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2.09.29>

③ 공사는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및 협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2.09.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포상금·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09.08.18, 20.10.30, 2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08.07.30, 09.08.18, 20.10.30, 22.09.29>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침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신설 08.07.30><개정 09.08.18, 22.09.29>

**제20조(신고자 포상 대상)** ① 포상금 지급은 내부신고자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09.08.18><개정 14.02.19, 15.10.30>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금전환수 및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2. 공사 사규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타인의 금품수수 행위 등을 신고한 경우
4. <삭제 20.10.30>
5. 부패행위 신고에 따라 공사의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대내·외적으로 반부

패의식을 깊이 심어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부패발생 방지대책 등을 제안하여 채택된 경우

6.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사장은 제1항 3호의 신고로 인하여 제1항 1호 및 5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직, 진출·전입,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 시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신설 15.10.30><개정 20.10.30>

**제21조의(보상금 등의 지급)** ① 이 지침에 따른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보상금·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08.07.30, 09.08.18, 20.10.30>

② 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 및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개정 08.07.30, 09.08.18, 20.10.30>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수인이 연명으로 신고하거나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연루된 경우의 신고 사항 <신설 14.02.19>

4.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신설 20.10.30>

5.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개정 14.02.19>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장은 제1항 또는 제20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08.07.30, 09.08.18, 15.10.30, 20.10.30>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0.30>

**제21조의2(구조금의 산정 기준)** ①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과건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입료
  -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신고 및 협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는 금액(법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개정 22.09.29>
    -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 ④ 구조금 지급액의 감액은 제20조 2항을 준용하며, 구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제23조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0.30]

**제22조(부패신고자 보상위원회 구성 등)** ① 부패신고로 인한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08.07.30, 13.10.18, 14.02.19>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08.07.30, 20.10.30>
  - 1.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 2.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감사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 인사부서 및 예산부서의 실장 또는 부장과,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요건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하는 부서의 실장 또는 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08.07.30, 09.08.18, 20.10.30>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투표결과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⑥ 위원회는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08.07.30, 20.10.30>

[제목개정 13.10.18]

**제23조(지급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08.07.30, 09.08.18, 20.10.30>

-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 2. <삭 제 14.02.19>
  - 3. 감사원,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 5. 그 밖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② 직제규정에 따른 부패행위 감사·조사 등을 직무로 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09.08.18>

**제2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사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09.08.18, 15.10.30, 22.09.29>

② 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2.09.29>

③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개정 22.09.29>

**제25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

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개정 22.09.29>

부 칙 <개정 09. 10. 14>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이 지침은 2009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10. 09. 30>

[본조신설 20.10.30]

이 지침은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6조(교육)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신고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4.02.19>

부 칙 <개정 11. 12. 2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감사실 주관 집체교육, 부서별 자체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1.11.24>

이 지침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13.10.18]

부 칙 <개정 11. 12. 20>

부 칙 <제정 05. 6. 30>

이 지침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3. 10. 18>

부 칙 <개정 08. 7. 30>

이 지침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4. 02. 19>

부 칙 <개정 09. 8. 18>

이 지침은 201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09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5. 10. 30>

이 지침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8. 10. 00>

이 지침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 10. 30>

이 지침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1. 11. 24>

이 지침은 202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2. 09. 29>

이 지침은 2022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08.07.30, 09.08.18, 11.12.20, 13.10.18, 14.02.19, 20.10.30>

**부패신고 보상금 등 지급 기준**

**1. 보상금**

보상대상가액	보상금 지급기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부패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을 말하며,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2. 포상금**

행위구분	포상금 지급기준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	· 수수금액의 5배 이내 (단, 조사 및 확인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은 제외)												
타인의 공금횡령 신고	· 횡령금액의 20% 이내												
타인의 공금유용 신고	· 유용금액의 10% 이내												
부패행위자 징계 등 처분시	<table border="1"> <thead> <tr> <th>경고</th> <th>견책</th> <th>감봉</th> <th>정직</th> <th>해임</th> <th>파면</th> </tr> </thead> <tbody> <tr> <td>50만원</td> <td>100만원</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 처분 확정시 최대 지급금액으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급													
기타 부패예방 제안, 청렴도 향상 기여 등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지급													

※ 상기 사항 중 지급항목이 중복된 경우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3. 한도액**

- 보상금 : 30억원
- 포상금 : 2억원

(별표 2) <신설 09.10.14>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08.07.30, 09.08.18, 11.12.20, 13.10.18, 14.02.19, 22.09.29>

##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조사 및 처분기준

### 1.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에 관한 확인·조사

○ 확인대상

-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소속부서의 직원 (필요시 관련부서 담당자 및 책임자 포함)

○ 확인시점

- 자체적발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시부터 종료전까지 확인
- 외부기관 적발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없이 확인

### 2.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분

○ 처분기준

- 직근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처분 요구
-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임직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처분 요구
- ※ 단,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동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기준보다 낮은 징계책임 부과

○ 처분시 고려사항

-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경중,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관계,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처분 요구

##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이름						
	소속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부패신고 취지 및 이유							
부패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별첨가능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한국항공공사 상임감사위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2.09.29>

**접 수 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 수 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09.08.18, 13.10.18, 14.02.19, 20.10.30>

**신고자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지	(전화번호)		
	거 주 지			
부 패 행 위 신 고 사 항	부패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부패발생 부서	부서명		소 재 지
	부패행위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직 급
신고내용 (요 약)				
조 사 결 과	결과통지서	발송일자		발송번호
	통지내용			
보상금지급신청금액			지 급 방 법	
포상금지급신청금액				
구조금지급신청금액				
합 계				
부패신고제도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인)
<b>한국항공공사 부패신고보상위원회 위원장 귀하</b>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13.10.18, 14.02.19>

(별지 제9호 서식)

### 비위행위 자진신고서

「부패신고제도 운영 및 신고자 보호지침」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진 신고합니다.

신 고 자		소 속		직위(급)	
건 명					
비 위 내 용					
자진신고 사 유					
비 고					

신고자 : (인)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건 명						
심 의 대 상 자	소 속		직위(급)		성 명	
비 위 요 지						
자 진 신 고 사 유						
사 실 관 계 조 사 결 과						
심 의 결 과						

20 . . . .

심의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12호 서식)<신설 20.10.30>

<b>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b>			
<b>① 추천기관</b>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b>② 포상금 지급대상자</b>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 내부 신고자		[ ] 외부 신고자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b>③ 추천사유</b>			
<b>④ 조사결과</b>	신고 접수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b>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b>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b>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b>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신설 22.09.29>

<b>&lt;&lt;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gt;&gt;</b>	
<b>□ 신고를 준비하실 때</b>	<p>○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시십시오.</li> </ul> <p>○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li> </ul> <p>○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li> </ul>
<b>□ 신고를 접수하실 때</b>	<p>○ 허위신고를 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li> </ul> <p>○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p>
<b>□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사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b>	<p>○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입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li> </ul> <p>○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신고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 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li> </ul>
<b>□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권익위 신고자에 한함)</b>	<p>○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공공기관 수입의 4~3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ul> <p>○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p>